

나) 허가기준

- (1)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다) 허가권자

- (1)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가)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제6조) - 공립학교 교장(고등학교, 특수학교 제외),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직속기관 포함) 교육공무원의 겸직 허가  
(나) 학교장 재위임하는 사무 중(제7조) - 소속 교원 겸직 허가(교장 제외)  
(다) 직속기관장 재위임하는 사무 중(제8조) -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허가(기관장 제외)

라) 절차

- (1)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겸직허가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겸직허가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 (2) (심사)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보수,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 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 \* (1) 겸직기관의 정관상 목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겸직기관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활동(의견 발표) 등을 하는 경우,  
(3)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  
\* 겸직 활동 신청 기간 중 공직선거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신중한 허가 필요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